

회계규정시행세칙

전문개정 2007.11.19

개정 2011. 6.29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5. 6.30(개폐정리)

개정 2020. 6. 3(개폐정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회계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계처리 업무는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하며 이 세칙이외의 사항을 취급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1절 거래의 종류

제3조 (거래의 종류) 거래는 입금거래, 지급거래, 대체입금거래, 대체지급거래로 한다.

제2절 분개장의 작성

제4조 (분개장의 작성 원칙) ①분개장은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계정과목별로 작성하며 거래일자, 거래금액, 적요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특별사업 계정에 대한 거래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하여 작성한다.

제5조 (적요의 입력) 분개장의 적요란에는 거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표시해야 하며, 손익계정의 입력시는 손익세부항목과 산출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액란의 표시) 분개장의 대변과 차변금액은 총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체거래의 작성) ①대체거래의 경우 대체거래 상호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일부 현금 출납이 있는 일부대체거래의 경우 현금 출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분개장의 정정 및 이관 거래

제8조 (분개장의 정정) ①분개장의 일자, 금액과 계정과목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취소거래는 발생한 오류 거래와 동일변에 적자 회계처리하고 정당거래는 흑자 회계처리한다.

③취소거래와 정당거래의 적요란에는 취소와 정정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오류 금액은 전액을 정정한다. 다만 경비에 있어서는 오류금액과 정당금액의 차액만을 정정할 수 있다.

제9조 (마감전의 정정) 당일 회계처리 마감전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오류 거래 입력은 삭제하고 정당 거래를 입력한다.

제10조 (마감후의 정정) 마감후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날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처리한다.

제11조 (전기이전분의 정정) ①전기이전거래의 오류 정정은 흑자대체거래 입력함을 원칙으로 하고 적요란에 “전기이전분 정정”이라 표시한다.

②전기이전분이 손익계정인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

이익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손익금의 환입과 환출)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손익계정에 대하여 융자금의 기한내 상환, 보증기간내 보증의 해제,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손익계정의 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을 적자 회계처리한다.

제13조 (이관 거래의 처리) ①각 부점간에 발생하는 자산이관, 거래계정이관 및 업체이관등에 따른 계수이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산이관 :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이관하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는 이관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이관한다. <개정 2011.6.29>
2. 거래계정이관 : 가수금, 예수금, 원천제세, 가지급금등에 대한 거래계정의 이관은 합계액으로 처리하되 명세 및 내역은 적요란에 기재하거나 이관문서 시행한다.
3. 업체이관 : 융자금잔액, 제보증잔액, 제보증대충잔액, 제계정잔액과 이관일 전일기준으로 도래되지 않은 보증수수료 선수분중 관련 보증의 해지 및 취소에 따라 환불이 발생하는 기간적용 보증수수료를 이관한다. <개정 2011.6.29>

②이관 거래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관지(본)사 : 이관할 계정의 잔액이 있는 대변 또는 차변에서 그대로 적자 처리하고 그 상대과목인 본지사계정 또한 동일변에 흑자처리한다.
2. 수관지(본)사 : 본지사계정을 이관한 지사의 계정과 반대변에 정리한 후 상대과목은 수관한 본지사계정과목으로 하여 동 계정이 발생하는 반대변에 흑자처리한다.

제3장 계산절차

제14조 (분개장의 검사) ①회계담당자는 회계업무를 마감하기 전에 계정과목의 적정 처리, 계산금액의 적정성, 본지사거래의 누락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단위관리자는 분개장에 대한 승인시 일계표, 총계정원장차감잔액장을

대사하여 잔액의 일치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분개장의 보관) ① 회계단위관리자가 승인한 분개장은 해당 부서의 전
자결재 부서함에 보관한다.

② 분개장의 보존기간은 문서규정 제47조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다. <개
폐정리 2020. 6. 3>

제16조 (잔액 대사) 회계담당자는 현금시제와 통장수불액을 시제현황, 현금출
납장, 일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마감이후 거래의 취급) 마감이후 회계거래는 다음 영업일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적요란에 전일자 발생 거래임을 표시한다.

제18조 (본지사계정) ① 본지사계정은 당발거래와 타발거래로 구분하며 자점
에서 타점앞으로 계정을 일으킨 것은 당발거래로, 타점에서 자점앞으로 계
정을 일으킨 것은 타발거래로 처리한다.

② 취급번호는 매 회계년도초에 갱신하며 부서별로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취급된 취급번호는 당해 본지점거래를 정정 또는 취소
한 경우에도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4장 결산절차

제19조 (결산) ① 결산마감은 매년 12월말일 현재로 하고 말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순차 그전일로 한다.

② 결산일자와 결산서류의 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계정잔액 대사) 회계단위관리자는 각 보조부의 누계 및 잔액을 총계
정원장 각 계정의 누계 및 잔액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산정리) ① 결산시에는 매 회계연도말에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정리계정을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정리계정은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채권예수금, 본지사계정등을 말한다.

③자산, 부채 및 손익계산기록을 수정하고 확정급여부채와 감가상각누계액, 책임준비금, 대손충당금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제22조 (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표준식으로 작성하되, 당해연도분과 직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포괄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3조 (결산조정)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및 선수수익은 결산일 현재로 각각 계산하여 산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보정처리한다.

1. 미수수익

결산일 현재 아직 수입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당기에 속하는 융자금미수이자, 유가증권미수이자, 예금미수이자, 미수보증수수료 및 미수임대사업수익중 보정하기로 결정된 것은 각 해당 이익금 과목으로 대체처리하고, 다음연도 초일자로 각 해당 손실금보정액과목으로 환출처리한다.

2. 선급비용

보험료, 지급이자등 기간손익의 구분이 필요한 선지급분중 차기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각 해당 손실금 과목과 대체정리하고, 다음연도 초일자로 각 해당 손실금보정액과목으로 환출처리한다.

3. 미지급비용

당기에 속하는 지급이자와 비용중 결산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을 산출하여 각 해당 손실금과목으로 대체정리하고, 다음연도 초일자로 각 해당 이익금보정액과목으로 환입처리한다.

4. 선수수익

이미 수입하였으나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수익은 각 해당 이익금과목과 대체정리하고, 다음연도 초일자로 각 해당 이익금보정액 과목으로 환입처리한다.

제24조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 <개정 2011.6.29>

제25조 (당기손익금의 산출) 총계정원장의 각 손익계정과목은 결산일자로 마감하되 따로 당기 손익금계정을 설치하고 총계정원장차감잔액장상의 수익·비용합계액을 이익금·손실금 과목으로 각각 기표하여 당기손익금을 산출한다.

제26조 (총계정원장의 잔액이월) 기말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이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산으로 이월한다.

1. 이월일자는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2. 현금계정이외의 계계정의 “차변잔액합계”는 대변금액으로, “대변잔액합계”는 차변금액으로 하여 이월한다.

제27조 (결산손익금의 처리) ①각 영업부서는 당기손익금을 결산일 영업 마감 후 본사 앞으로 이관한다.

②본사에 이관된 당기손익금은 대체정리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가계정 정리

제28조 (가지급금의 처리) 장차 정당계정으로 정리될 것으로서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절차미필로 인하여 정당과목처리가 곤란한 일시대지급금 및 타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지급금, 거래처 기타 외부에 대한 일시지급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지급금의 범위) 다음 각호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현금전도금
2. 사고피해액과 그 수습비용

3. 출납부족금
4.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대지급금
5. 여비개산 전도금
6. 기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

제30조 (가지급금의 취급) 가지급금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수금의 처리) 장차 공사의 계정으로 수입될 자금으로서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되어 정당계정 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계정의 정리는 대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수금의 범위) 다음 각호는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출납과잉금
2. 계정불명 수입금
3. 정당계정처리를 보류하는 일시 수입금
4.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일시수입금

제33조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일부정리) ①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일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생 거래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정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발생 거래일자와 정리 일자를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4.30〉

이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3〉

이 세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